2027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 FAQ

2026. 11.4(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극무용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의 우수한 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 간 협력**을 통해 **공연 창·제작 및 발표 역량**을 높이고, **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공연예술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7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FAQ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FAQ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신청

Q1. 공모신청과 교부신청은 누가 해야하나요?

→ **본 사업의 공모 신청 주체는 지자체**이며, 선정 후에는 **협력 공연장의 운영주체가 보조금 교부·집행 주체로 참여**합니다. 공모 신청 후 선정되면, **선정 지자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교부신청을 통해 국비를 교부**받아서 **지방비와 함께 다시 공연장 운영주체로 재교부**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만 지자체 직영 공연장의 경우, 예산 집행·정산 주체는 공연장 운영 주체인 지자체이며, 문화예술과 혹은 공연장 소관 부서 등 지자체 내에서의 업무 연관성에 따라 예산 집행·정산의 담당 부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공모 신청과 사업 수행 부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 신청은 문화예술과에서, 선정 이후에 교부 신청 및 사업 수행은 공연장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2. 단체가 여러 지자체와 협의 중일 때 복수 신청이 가능하나요?

→ **불가합니다.** 예술단체는 반드시 **1개 지자체와 1건만 매칭**해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경우, 최종 협력 지자체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Q3. 기초지자체의 재원 출처가 복수(광역, 기초)일 경우 지방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광역·기초 재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방비 매칭 비율은 신청 지자체의 '24년 결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재정자립도가 15%인 A시가 10억원을 신청 시, 지방비 매칭비율은 40%인 4억원이고, 이 중 광역/기초 지방비 분담 비율을 확정하여 확약서 제출

Q4.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한 장르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가 속하는 광역지자체에서는 같은 장르는 신청이 불가능하나요?

→ 공모를 신청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모두 각각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에서 특정 장르를 신청했더라도, 해당 기초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에서는 별개로 장르별 1개 단체(최대 4개 단체) 신청 가능합니다.

Q5. 예술단체가 협력하는 지정 공연장이 여러 곳이어도 괜찮나요?

→ 지자체는 **선정하는 단체당 하나의 협력 공연장을 지정**해야 하며, 하**나의 단체에 지자체가 여러 개의 협력 공연장을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는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 지자체에서 여러 개의 단체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하는 공연장이 여러 개일 수 있고, 한 개의 공연장이 여러 개의 단체와 협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기초지자체가 속한 광역지자체에서는 별개로 장르별 1개 단체(최대 4개 단체) 신청 가능합니다.

예) 지정 가능한 협력 공연장이 A, B 공연장 2개이고, 신청 단체가 (가). (나) 2개일 때 예시

(가능) A공연장 - (가) 단체, (나) 단체
A공연장 - (가) 단체 / B공연장 - (나) 단체

(불가능) A공연장, B공연장 - (가)단체

Q6. 2026년 지자체·협력 공연장·예술단체 협력구조로 지원하여 선정되었는데, 2027년에는 지자체, 협력공연장, 예술단체 중 일부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선정단체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 선정된 지자체·협력 공연장·예술단체 협력 구조 중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선정단체" 유형이 아닌 **"신규 지원단체" 유형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술단체는 지원 구조 변경과 관계없이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연장 선정

Q1. 지정하는 공연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공공 공연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문화시설 총람 기준 문예회관 및 기타 공공 공연장** (총람 등재된 문예회관 외 지자체 설립 또는 공기업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Q2. 지역문화재단이 대관하여 운영하는 공연장으로도 지원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전국 문화시설 총람(최신 기준)에 등재된 문예회관이거나, 지자체 설립 또는 공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 공연장 제외)

Q3. 공공 공연장으로서 총람에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공연장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가능한 문예회관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서울지역 제외)으로 하고 있으며,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공연장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어 공공 공연장임을 증빙하셔야 합니다.(국립 공연장은 불가)

Q4. 국립 시설은 본 사업에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본 사업은 전국 문예회관(전국 문화시설 총람 기준)을 포함하는 공공 공연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립 시설은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5. 광역 지자체에서 협력 공연장을 지정하는 경우, 광역 내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공연장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광역지자체가 신청 주체인 경우,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을 협력 공연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광역 내 기초지자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은 광역지자체가 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협력 공연장으로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 위 제한은 협력공연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협력 공연장이 아닌 3개 지역 이상 공연을 위해 공연 계획 제출에 포함되는 다른 지역 공연장은 기초지자체 소관 공연장이라도 가능합니다.

Q6. 공연장 또는 지역문화재단이 2027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는데, 해당 사업에 신청이 가능할까요?(중복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공연장 또는 지역문화재단이 2027년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더라도(예산을 교부받더라도), 협력하는 신청 "단체"가 상주단체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협력 공연장으로서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예술단체"의 경우에만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예술단체 선정

Q1. 서울 소재 예술단체도 지역 유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단체의 주소지를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소(분점)를 설치**하여 실질적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전 또는 사업소 설치 여부는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를 통해 확인하며, 공모 신청 이후 주소지 이전 또는 사업소 설치를 진행할 예정인 경우에는 최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는 지역에서의 체류도 권장**합니다.

4 연속 지원

Q1. 2024, 2025, 2026년 중 지역 대표예술단체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단체가 신청할 경우, 지원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 지역 대표예술단체의 지원기간은 단년이며,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단체별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2024, 2025년 선정된 단체의 경우에는 지원 건수와 관계없이 1년 지원**받은 것으로 산정되어 진행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 선정, 2025년 미선정 단체 : 1년 지원 이력으로 산정
2024년 미선정, 2025년 선정 단체 : 1년 지원 이력으로 산정
2024, 2025년 연속 선정 단체 : 1년 지원 이력으로 산정

Q2. 2026년도에 선정된 단체에 대한 연속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2026년도에 선정된 단체가 2027년도에 연속해서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서 작성 시 "2026년 기존 선정단체"에 체크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체는 **'27년 사업계획 및 '26년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7년도 기준으로 기존 선정단체는 전체의 60%, 신규 지원단체는 40% 수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선정 비율은 2027년도 사업 지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Q3. 연속 지원 시 다음 연도에 사업 예산 조정이 가능한가요

→ '27년 사업계획(예산 집행계획 포함)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27년 지원신청 금액이 '26년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지원 조건

Q1. 해당 지자체 내에서의 공연 6회 이상, 3개 지역 이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 **"해당지자체"는 광역 기준을 의미**하며, 광역 내에서의 협력 공연장을 포함하여 기초지자체 3개 지역 이상에서 6회 이상의 공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별로 공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예술단체·공연장이 협의하여 계획해주시면 됩니다.

예) (기초지자체 신청 예시) 전주시에서 신청 시,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초지자체 2곳을 포함하여 3개 지역 이상 공연
(광역지자체 신청 예시) 인천광역시에서 신청 시, 협력 공연장이 속한 인천광역시 A구와 이외의 다른 자치구 2곳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내 3개 지역 이상 공연

Q2. 협력 공연장을 포함한 3개 이상 공연장(지역)에서의 공연 계획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협력 공연장 외에 다른 지역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공공 공연장이 아니어도 괜찮나요?

→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협력 공연장의 대상은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입니다.
다만 협력 공연장 외에 다른 지역에서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은 반드시 공공 공연장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공공 공연장을 연계하는 사업 취지상 공공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권장**합니다.

Q3. 야외공연의 형태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예술단체와 지정 공연장 간 협의를 통해, 공연 장소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세워야하고, 6회 이상(3개 지역 이상) 계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야외 공연만'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야외 공연을 포함할 경우에도, **야외 공연에 대해서 유료공연 및 온라인 티켓예매·발권은 필수**입니다.

Q4. 유료 공연이 필수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티켓은 장당 최소 정가 1,000원 이상 책정**하되, **온라인 티켓예매·발권 필수**이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26년 티켓판매수·판매액을 공개**합니다.
다만, 지역 공연예술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티켓 가격은 10,000원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공연 티켓 할인 정책은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Q5. 무료 초청 객석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 무료 초청의 경우, **공연 회차별 객석 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초과 시 사업비 외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6. 본 사업을 통해 발행된 수익금(티켓 판매액, 부가 상품 판매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 종료 시 정산 보고 내용에 포함하고 **수익금 사용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속 주체 등 활용 방법은 **사업 목적 내에서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Q7. 현재 문예회관이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결제 등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티켓 판매 수·판매액을 공개할 예정으로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은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6 사업 운영

Q1.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최종 보조금 교부 대상은 공연 시설**이며, **공연 시설이 사업비 집행·정산의 의무**가 있습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증빙 등록 필수입니다. (비예치형의 경우 별도 증빙)

Q2. 공연장에서도 기획 인력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공연장에서 전담 기획 인력을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연을 기획하고 행정업무 전반을 전담 등 사업 기획·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술단체도 전담 기획 인력을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